

비판인문학의 두 가지 쟁점 : 문학권력과 애도의 정치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오후 3시
서교예술실험센터(홍대앞)

사회 : 문강형준(문화평론가)

제1발제

베껴쓰기, 혹은 필사의 파국

- 신경숙 표절 사건과 한국문학의 폐쇄성 비판

발제: 오창은(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고봉준(문학평론가)

제2발제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는 어떻게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 되었는가?

- 애도의 정치 관점에서

발제: 정원옥(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토론: 김정환(고려대학교 HK 연구교수)

○ 공동주최 : 계간 <문화과학>, 문화연대

○ 문의 : 문화연대 02.773.7707

베껴쓰기, 혹은 필사(筆寫)의 파국*1)

- 신경숙 표절 사건과 한국문학의 폐쇄성 비판

오창은 / 문학평론가, 중앙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1. ‘신경숙 표절’이라는 문학적 사건

하나의 문학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이 도래한 것이다. 과거의 묵인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었기에, 순간적 단절을 감내하며 다른 방식의 조건을 탐색해야 한다. 2015년 6월 16일, 한국문학은 폭풍우에 휘청거리는 느티나무가 되었다. 그 중심에 이응준과 신경숙이 있었다.

이응준은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 - 신경숙의 미시마 유키오 표절」²⁾이라는 글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게재했다. 그는 신랄한 어조로 ‘신경숙 표절’을 제기하며 언어의 비수를 던졌다.

이응준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憂國)」³⁾과 신경숙의 「전설」⁴⁾에서 각각 한 단락을 인용하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인용한 단락들의 유사성은 “의식적으로 도용(盜用)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튀어나올 수 없는 문학적 유전공학의 결과물”이라고 했으며, “명백한 절도행위-표절”이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이응준은 “신경숙은 표절시비가 매우 잦은 작가”라고 했으며, 「전설」 이외에도 「딸기밭」과 『기차는 7시에 떠나네』도 논란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응준의 고발장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커다란 논란에 휩싸였다.

신경숙이 누구인가? 1990년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였고, 지금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과 만나는 자리에서 가장 앞 좌석을 차지하는 작가였다. 그는 영문판 『엄마를 부탁해(PLEASE LOOK AFTER MOM)』에서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읽히고 있고 가장 널리 호평 받는 작가 중 한 사람”(One of South Korea’s most widely read and acclaimed novelist)라고 소개되고 있다.⁵⁾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상인 만해문학상, 동인

1) 이 글은 문화연대와 한국작가회의가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회 ‘최근의 표절 사태와 한국 문학권력의 현’에서 발표한 「신경숙 작가 표절 국면에서 문학권력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긴급토론회는 이동연(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6월 23일(화) 오후 4시에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제1발제는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신경숙 작가 표절 논란의 진실, 혹은 문화적 맥락」이었고, 제2발제는 오창은(중앙대 교양학부대학 교수)의 「신경숙 작가 표절 국면에서 문학권력의 문제」였다. 토론은 심보선(시인), 정원옥(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 정은경(원광대 문창과 교수), 조영선(변호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맡았다.

2) http://www.huffingtonpost.kr/eungjun-lee/story_b_7583798.html

3) 三島由紀夫, 金后蘭(시인) 옮김, 『金閣寺 憂國 연회는 끝나고』, 株式會社 主友, 1983.

4) 신경숙, 「전설」, 『오래진 집을 떠날 때』, 창작과비평사, 1996.

문학상,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하다. 국내 문학상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리나페르쉬 상(Prix de l'inaperçu)’과 ‘2011년 맨 아시아 문학상’도 수상했다. 특히, ‘맨 아시아 문학상’은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맨 부커상’을 후원하는 ‘맨 그룹’이 아시아 작가들에게 수상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신경숙의 최근작인 『엄마를 부탁해』는 세계 36개국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판매부수도 210만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숙의 상징적 권위는 ‘「전설」 표절 사건’으로 인해 뒤흔들리고 있다. 우선, 신경숙에 대한 문학적 평가가 2015년 6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신경숙 문학의 최대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한국문학 출판계도 베스트셀러 작가를 중심에 놓고, 대형 작가를 우대하는 도서출판 관행도 실험대에 올랐다. 신경숙의 책을 출간했던 ‘창비’ ‘문학동네’ ‘문학과지성사’은 ‘문학적 상징자본’을 앞세워 예전처럼 범상하게 독자를 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외국 언론들이 ‘한국문학을 알린 작가’로 지칭하던 신경숙 문학과 문학적 권위를 움켜쥐고 있던 ‘창비’ ‘문학동네’ ‘문학과지성사’가 유리창의 균열처럼 위태로워지자, 한국문학계 전체에까지 ‘신경숙 표절 사건’에 대한 책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그간 신경숙 표절에 대해 침묵해 왔던 문학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문학 시스템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국문학계가 ‘표절과 한국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적 국면’과 대면하고 있는 셈이다. 작가 개인에서 기인한 문학적 사건이 이토록 뜨거운 ‘들불의 불길’로 화해 한국사회 전체를 덥혔던 적이 근래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신경숙 표절 사건’은 2015년 한국문학의 대표 사건이자, 201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문학의 대표 스캔들’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신경숙 표절’은 ‘문혀진 것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다. 신경숙 문학이 1990년 문학에 국한되지 않고 2000년대를 대표하는 문학적 성취로 평가되던 즈음, 그의 작품은 표절 혐의가 짙다는 문제제기가 이미 이뤄졌었다. 한국 비평계에서는 ‘신경숙 표절’ 문제가 이미 크게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고, 비평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공방이 이뤄졌었다. 이미 알려져 있지만, ‘신경숙 표절’에 대해 문제제기한 이들은 박철화, 정문순, 김명인, 이명원 등과 같은 전투적인 평론가들이었다. 그러나, 평론가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는 이른바 당시 문학을 주도하던 문학권력에 의해 묵살되었다. 이미 지난 시기에 이뤄졌던 비판들에 기반해 이용준이 작심하고 ‘새로운 비판’을 칼날을 버려낸 것이다. 2015년 신경숙 표절 사건이 다시 집화되게 된 계기는 이용준의 용기있는 발언에 있었다.

2. 문학적 상징권력은 어떻게 ‘신경숙 표절’을 옹호했나

1990년대는 ‘내성의 문학’ 혹은 ‘여성 문학’의 시대로 불렸다. 공선옥·공지영·신경숙·은희경이 199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이다. 1980년대 변혁운동 담론과 어깨를 견주었던 이른바 ‘운동권 문학’이 퇴조하자, 개인의 내면에 대한 성찰과 내밀한 속삭임의 언어

5) Kyung-sook Shin, Chi-Yong Kim, trans., *PLEASE LOOK AFTER MOM*, New York : Vintage Books, 2012.

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신경숙은 1990년대 비평담론의 지지와 지원을 받았고, 그 후건인 그룹에 <문학동네> 동인 비평가들이 있었다. 신경숙과 <문학동네> 동인 그룹의 만남은 ‘내밀성의 소설’과 ‘사적인 것의 정치성’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비평담론의 구체적 성과였던 신경숙 문학이 2000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비평가들 사이에 문학적 전투가 펼쳐졌다. 1990년대 문학적 성과를 2000년대로 이으려는 <문학동네> 비평진영과 ‘내성의 문학’에 균열을 가함으로써 ‘전복적 재구성’을 모색하려는 비평가 진영의 쟁투였다. 현재의 결과가 증거하듯이 <문학동네> 동인이 암묵적으로 승리했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평론가들의 목소리를 묻혔다. 비판적 논의를 이끌었던 비평가들은 박철화·정문순·김명인·이명원 등이었다.

박철화가 <작가세계> 1999년 가을호에 게재한 「여성성의 글쓰기, 대화와 성숙으로 - 공지영, 신경숙, 은희경의 경우」는 신경숙에 비판적인 글이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신경숙의 『기차는 7시에 떠나네』에는 “프랑스 소설가 파트릭 모디아노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별다른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예민한 문제”라고 했다. 최윤의 「회색 그림자」와 윤대녕의 「3월의 전설」이 연상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경숙의 「작별인사」가 마루야마 겐지의 『물의 가족』의 표절이라는 문제제기를 했다.⁶⁾ 한겨레신문사 최재봉 기자는 1999년 9월 21일자 <한겨레>에 실린 「왜 신경숙씨 ‘딸기밭’에 남의 글이 그대로 담겼나」에서 『딸기밭』이 91년 숨진 재미유학생 안승준의 유고집 『살아는 있는 것이오』과 “모두 여섯문단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문장과 표현이 발견된다”고 밝혔다.⁷⁾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불문학을 전공한 박철화가 프랑스 작품을 거론하며 문제제기를 하자 신경숙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당시, 신경숙은 1999년 9월 28일자 「글마을 통신에 대한 기고문」에서 최재봉 기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소설화되면서 맥락이 달라져 유족에게 누를 끼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앞서서 굳이 해당 부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재미 유학생 안승준의 유고집을 참고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소설적 차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박철화의 글에 대한 반박이었다. 신경숙은 박철화에 대해 “유사한 모티프 한두 개를 발견해서 표절 운운하는 것이라면 그건 위험천만한 단세포적 주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거세게 반박했다.⁸⁾ 신경숙의 글쓰기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작가 자신의 강력한 반발로 묻혀버림으로써, 작가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정문순은 <문예중앙> 2000년 가을호에 실은 「통념의 내면화, 자기 위안의 글쓰기」에서 그간 발생한 신경숙 표절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여 공박했다. 그리고 “1995년 현대문학상 수상 소설집에 실린 「전설」이 일본 극우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憂國)」(학원사, 김후란 옮김, 1984)의 표절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정문순은 당시 다음과 같은 언급을 구체적으로 한 바 있다.

6) 박철화, 「여성성의 글쓰기, 대화와 성숙으로 - 공지영, 은희경, 신경숙의 경우」, <작가세계> 1999년 가을호, 작가세계사, 116쪽.

7) 최재봉, 「글마을 통신 - 왜 신경숙씨 딸기밭에 남의 글이 그대로 담겼나」, <한겨레> 1999년 9월 21일자, 24면.

8) 신경숙, 「‘글마을 통신’에 대한 기고문 - 출처 안밝힌 인용은 죄송, 표절혐의 이해할 수 없다」, <한겨레> 1999년 9월 28일자, 24면.

일제 파시즘기 때 동료들의 친위쿠데타 모의에 빠진 한 장교가 대의를 위해 자결한다는 「우국」의 내용과, 한국전쟁 때 한 사내가 전쟁터에 자원입대하여 실종되는 「전설」은, 남편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때 남은 아내들의 선택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점에서 주요 모티브부터 유사하다. 「우국」의 아내는 남편 따라 죽는 데 일호의 주저도 없으며, 「전설」의 여자는 남편의 실종 통보를 받고도 평생을 기다림과 그리움으로 보낸다. 또 10여 개의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한 문구는 물론이고 남편의 죽음이나 참전을 담담하게 수용하는 아내의 태도, 역순적 사건 구성, 서두에 역사적 배경을 언급한 전개 방식 등의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나 영향 관계로 해석될 여지를 봉쇄해버린다.⁹⁾

「우국」과 「전설」의 단락간 유사성과 문장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 실물로 제시되었다. 내용적으로 상관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정문순의 글이 적절한 증거로서 유효하다. 정문순은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한 상황설정과 신혼부부 관계, 모티프 등의 틀이 “우연의 일치나 영향관계”를 넘어서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렇듯 신경숙 문학에 대한 적절하고 유효한 문제제기가 박철화·정문순 문학평론가에 의해 이뤄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명인은 정문순을 글을 언급하며 “「전설」과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과의 유사성”은 “신경숙 신화’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¹⁰⁾ 이명원도 이미 2001년에 마치 지금의 사태를 예견한 듯 “신경숙은 일급의 작가에서 표절작가로 하향이동하는 ‘변신’을 몸소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했다.¹¹⁾ 이명원도 ‘표절은 자신의 언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정신의 식민화’인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이명원의 지적은 이미 2001년에 이뤄졌다.

문제는 박철화, 정문순, 김명인, 이명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숙의 문학은 1990년대 문학에 2000년대 문학으로 상찬되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한국문학의 대표적 상징의 자리잡았다는데 있다.

신경숙의 표절 사건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문학 제도에 대한 성찰의 문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기에, 신경숙 작가 표절 사태와 문학권력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동인과 에콜 중심으로 작동하는 출판상업주의와 문학권력의 폐쇄성이 지금의 신경숙 사건을 키웠다. 1990년대 한국문학은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사회>, 그리고 <세계의 문학>의 질서 속에 새롭게 <문학동네>가 문학의 상징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었다. <문학동네>는 ‘신경숙 신화’의 주역이었다. 중요 문학출판사는 문예지를 중심으로 문학생산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신인문학상 제도를 통해 ‘등단시스템’을 장악하고, 자기 매체 출신의 작가를 양성한다. 이들 신인작가들은 중요 문학출판사들이 운영하는 계간지들을 통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창작과 비평> <문학과

9) 정문순, 「통념의 내면화, 자기 위안의 글쓰기」, <문예중앙> 2000년 가을호, 중앙 M&B, 294쪽.

10) 김명인,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신경숙 소설 비평의 현황과 문제」, 『주례사비평을 넘어서』,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2, 46쪽.

11) 이명원, 「표절보다는 정신의 식민화가 문제다」, 『해독』, 새움, 2001, 109쪽.

사회> <문학동네> <세계의 문학> 등이 판매부수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간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문학상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문학적 권위의 상징을 독점하고 있기도 하다. 문학상을 받은 작품을 단행본으로 발간하고, 또는 자기 매체 출신 작가의 문학단행본을 간행함으로써 문단의 질서가 각 매체 중심으로 분할되어 있는 양상이다.

신경숙 표절 사건으로 민낯을 드러낸 것은 한국문학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출판상업주의가 문단의 작동 매커니즘이 되면서, 문학권력의 안과 밖이 사라졌다. 건강한 질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부상하는 전복적 흐름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문학적 신념에 따라 작가들의 이합집산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한국문학 질서는 창비나, 문학동네나, 문학과지성사나와 같은 출판사 소속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지금의 문학권력 질서 바깥의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신춘문예 당선이나 문예지 신인상 수상이라는 등단 질서만 통과하면, 그 이후에는 한국문학 내부자가 될 수 있다. 도전적 창조성보다는 기존의 질서에 부응하는 작품이 기존의 문학질서 속에서 보다 더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라면, 이러한 예술 생산 양식이 온당한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등단 질서를 통해 진입하는 절차는 가혹하고, 일단 진입이 이뤄지면 보편적 상식으로 용납되지 않는 표절과 같은 행위마저도 용서되는 상황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창작자의 윤리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의 보편적 운영원리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파생한다.

3. 한국문학 제도의 폐쇄성 비판

문학장의 폐쇄성에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부르디외는 『구별짓기』에서 문화권력은 ‘포함과 배제’, 그리고 전복과의 경합과정에서 자신의 상징권력을 구축한다고 했다.¹²⁾ 문학권력 내부에서 작가양성과 매체발간, 문학상수여와 단행본 발간까지 이뤄지다보니, 독자와의 관계 보다는 내부적 질서가 우위에 놓이게 된다. 이 질서의 ‘신화적 상징’이 바로 신경숙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문학권력의 폐쇄성은 이번 ‘신경숙 표절 사건’에 ‘창비’가 대응했던 방식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6월 17일 「창비 문학출판부의 입장」이라고 발표된 글에는 ‘전문가적 언어’로 포장된 권위주의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 두 작품의 유사성을 비교하기가 아주 어렵다. 유사한 점이라곤 신혼부부가 등장한다는 정도이다. 또한 선남선녀의 결혼과 신혼 때 벌어질 수 있는, 성애에

12) “예술작품의 물질적-상징적 소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징적 이윤은 해당 작품이 요구하는 성향과 능력의 회소성(역으로 이것이 작품의 계급적 분포를 규정한다)이 가져다 주는 변별적 가치에 의해 측정된다.(중략) 재화나 실천의 계급적 분포구조를 단순히 평행이동시키게 되면(이렇게 하면 각 재화의 소유자의 비율 또한 모든 계급에서 증가하게 된다) 각 재화나 실천의 회소성이나 변별적 가치를 감소시키고 이전부터 소유해온 사람이 누리던 구별효과를 위협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빠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1995, 368~369쪽.)

눈뜨는 장면 묘사는 일상적인 소재인데다가 작품 전체를 좌우할 독창적인 묘사도 아니다.(문장 자체나 앞뒤 맥락을 고려해 굳이 따진다면 오히려 신경숙 작가의 음악과 결부된 묘사가 더 비교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인용 장면들은 두 작품 공히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따라서 해당 장면의 몇몇 문장에서 유사성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표절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표절시비에서 다투게 되는 '포괄적 비문헌적 유사성'이나 '부분적 문헌적 유사성'을 가지고 따지더라도 표절로 판단할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창비 문학출판부의 입장」은 신경숙 표절 사건을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로 증폭시킨 기폭제 역할을 했다. '창비 문학출판부'는 명백한 단락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상식에 못 미치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이 글에서 “두 작품의 유사성을 비교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말하면서, “성애에 눈뜨는 장면 묘사는 일상적인 소재인데다가 작품 전체를 좌우할 독창적인 묘사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표절시비에서 다투게 되는 '포괄적 비문헌적 유사성'이나 '부분적 문헌적 유사성'을 가지고 따지더라도 표절로 판단할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글 작성자는 곤혹스러운 무의식의 문장 속에서도 드러난다. 인용문에서 “사실 두 작품의 유사성을 비교하기가 아주 어렵다”라고 한 부분은 일반적 문장이라면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유사성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마치 “사실 두 작품은 매우 유사하다”라는 무의식적 의미가 이 문장에 기입되어 있는 듯이 읽힌다. 보다 명료하게 이야기하자면, 인용문의 “비교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유사성이 (거의) 없다”라고 표현되어야 했다. 인용문의 집필자가 그런 확신을 할 수 없었기에 ‘언어적 굴절’이 무의식적으로 끼여든 것이다.

더 나아가 작성자는 과잉해석으로 “신경숙 작가의 음악과 결부된 묘사가 더 비교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평가는 문학전문가의 판단을 내세워 시민적 상식으로 판단 가능한 단락의 유사성을 희석시키고 있는 표현이다. '포괄적 비문헌적 유사성'이나 '부분적 문헌적 유사성'이라는 표현은 전문가적 언어를 동원한 적극적 방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표절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먼저 앞세운 상태에서 근거를 제시하려 했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경숙의 「전설」과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은 '창비 문학출판부'에서 밝힌 것처럼 “신혼부부가 등장한다”는 정도의 유사성만 있는 작품이 아니다. 이 두 작품은 구성적 측면과 서사적 측면에서 많은 유사성이 있다.

구성적 측면에서 볼 때, 「전설」과 「우국」은 둘 다 '쿠데타'와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작품의 서두에 기술하고 시작한다. 「전설」은 한국전쟁에 대한 작가의 해설적 진술로 시작하고, 「우국」은 1936년 일본에서 발생한 '2·26사건'에 대한 작가의 해설적 진술로 시작한다. 공간 설정의 유사성도 있다. 「전설」이 '여자와 남자'의 사랑이 머물렀던 사직동 적산가옥과 사과나무라는 장소성을 중시한다면, 「우국」은 타케야마 신지 중위와 레이코가 자살한 '요쓰야 구 아오바 정 육번지의 자택'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서사가 펼쳐진다. 무엇보다 소설의 내용적 구분이 「전설」과 「우국」 모두 '1·2·3'과 같이 숫자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 유사점이다. 신경숙 소설에서 '1·2·3'과 같은 구분법이 비교적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엽적이지만 두 작품

의 구성적 측면의 유사점이 예상롭지 않아 보인다.

서사적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미 ‘창비문학출판부’가 지적한 젊은 신혼부부의 비극이라는 유사성 이외에도 서사적 갈등의 계기도 유사하다. 「전설」의 경우는 전쟁이 발발하자 ‘남자’의 친구들은 ‘신혼이라 배려한다’는 심정으로 자원입대했고, 이로 인한 심적 부담으로 ‘남자’도 자원입대하여 전사한다. 「우국」에서도 타케야마 신지 중위의 동료 장교들도 ‘신혼 중인 걸 생각’해서 쿠데타에 가담시키지 않았고, 이 때문에 ‘동료를 토벌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에 할복자살을 감해하게 된다. 무엇보다 두 작품은 ‘불안의 정서’가 지배하고 있는 작품이다. 「전설」은 남자의 명민함과 여자의 우아함을 강조하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의 정조를 작품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우국」 또한 ‘나무랄데 없이 아름다운 남녀의 결합’ 속에 ‘불길한 것’ 혹은 ‘비상시’라는 불안한 상황을 대비시켰다. ‘불안’ ‘두려움’의 정서를 통해 「전설」은 ‘역사적 폭력 앞에서 파괴된 여자의 삶’을 그렸고, 「우국」은 전체주의를 위해 자기희생을 선택한 타케야마 신지와 레이코의 죽음을 미학화하고 있다.

물론 「전설」은 신경숙이 1994년에 발표한 작품이고, 「우국」은 미시마 유키오가 1961년에 발표한 작품이기에 뚜렷한 차이도 있다. 「전설」이 여성적 낭만주의로 ‘삶의 순환적 연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국」은 남성적 목소리로 군국주의를 위한 희생을 찬양하려는 분명한 의도성을 드러낸다. 앞의 작품의 역사적 폭력 앞에 선 여성 개인의 흔들리는 내면을 그리고 있다면, 뒤의 작품은 신념에 찬 남성의 ‘거침없는 죽음’을 서사화했다. 이러한 차이는 작가들의 처해 있는 시대적 맥락의 차이이면서, 신경숙이라는 여성작가와 미시마 유키오라는 남성작가의 문학적 기질의 차이이기도 하다. 오히려 두 작품이 드러내는 문학적 결의 차이가 두 작품의 유사성을 두드러지게 한다. 상이한 역사적 맥락과 작품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작품은 구성적 측면과 서사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두드러진다. 게다가 결정적이게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동일한 내용을 표현한 단락’이 구체적 증거로 실재해 있다.

그런데도, 「창비 문학출판부의 입장」은 문학전문가 중심주의를 앞세워 독자의 상식적 판단을 억압했다. 창비는 신경숙의 표절을 명백히 옹호하려는 의도에서 논평을 발표했다. 물론, 다음날인 6월 18일에 창비 대표이사 강일우의 명의로 발표한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도 “내부조율 없이 적절치 못한 보도자료를 내보낸 점을 사과드립니다”라고 하면서도 “지적된 일부 문장들에 대해 표절의 혐의를 충분히 제기할 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창비는 표절 판단을 유보하겠지만, 문제제기의 타당성은 있어 보인다는 의미로 해설될 수 있는 어구이다.

「창비 문학출판부의 입장」과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은 두 작품의 유사성에 비취볼 때, 보편적 기대치에도 못 미치는 책임 회피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신경숙 작가가 표절을 부인함으로써 문제가 확산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차라리 작가가 ‘20여년 전 젊은 작가 시절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라면 파국에 이르지지는 않았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다. 신경숙은 문학을 처음 시작했던 때의 감격적인 감정을 초기 산문집 『아름다운 그늘』에서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이렇게 일찍 산문집을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겨우 서른셋이에요. 마음속을 소설이 아닌 다른 책은 제 일생에 한 권만 가져야 했습니다.”라고 했다. 겸손이 묻어나는 문장이며, 글쓰는 이의 겸허함을 느끼게 하는 어

조의 문장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신경숙은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위치에 서 있는 듯하다. 지킬 것이 많아 조심하는 하는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다. 작가는 상투적인 작품을 생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자유로움에 대해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 신경숙은 자신의 과거 잘 못 마저 끝까지 감춰야 할 정도로 자유를 박탈당한 작가가 되었다. 초심을 잃은 신경숙의 두려움이 자신의 상황을 더 큰 나락으로 내몰고 있기에 작가 자신의 용기가 문제해결의 정점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문학은 시민사회와 함께 존재하는 공동의 자산이다. 문학이 폐쇄적 형태로 자기 세계를 고집할 때, 전문직업주의의 폐해가 문학을 더욱 고립적인 상태로 내몰게 한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전문직업주의가 현대사회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구와 비서구 세계를 막론하고, 오늘날 지성인에 대한 특별한 위협은 학문기관도 아니며, 도시교외도 아니며, 저널리즘과 출판사들의 전율스러운 상업주의도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내가 전문직업주의 professionalism 로 부르고자 하는 태도에 있는 것이다.”¹³⁾고 했다. 오로지 전문가로서 자기영역의 작동만 우선시 하는 태도가 오히려 시민 민주주의의 문제와 같은 보편적 문제도 외부의 문제로 간주하게 만든다. 전문직업주의는 ‘문학의 문제는 오로지 문학인들이’, ‘문학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내부자적 시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러한 태도가 ‘비논쟁적이고, 비정치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강조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문학의 현재 상황도 혹시 작가라는 보편적 지성의 열림이 아니라, 문단 질서에 안존하는 전문직업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4. 베껴쓰기 언어의 휘청거림

그렇다면, 신경숙 문학에서 표절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신경숙은 습작 시절 필사(筆寫), 즉 ‘베껴쓰기’를 통해 글쓰기 훈련을 했다. 그는 1995년에 간행 첫 산문집 『아름다운 그늘』에서 자기 문학의 기원에 대해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글에서 그는 한국문학의 중요 작품들을 노트에 한자 한자 옮겨 적으면서 위안을 받았고, 글을 쓰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江을 시작으로 나는 그 여름을 온통 내 노트에 선배들의 소설을 옮겨적는 일을 하며 지냈다. 최인훈의 웃음소리, 김승옥의 무진기행, 이제하의 태평양, 오정희의 중국인거리, 이청준의 눈길, 윤홍길의 장마, 최창학의 滄, 강호무의 화류향사…… 그냥 눈으로 읽을 때와 한자 한자 노트에 옮겨적어볼 때와 그 소설들의 느낌은 달랐다. 소설 밑바닥으로 흐르고 있는 양감을 훨씬 더 세밀히 느낄 수가 있었다. 그 부조리들, 그 절망감들, 그 미학들. 필사를 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것이다. 나는 이 길로 가리라. 필사를 하는 동안의 그 황홀함은 내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각인시켜준 독특한 체험이었다. 방학이 끝났을 때 필사를 한 노트는 몇 권이 되었고, 그 노트들을

13) 에드워드 W. 사이드, 전신욱·서봉섭 옮김, 『권력과 지성인』, 도서출판 창, 2006, 129쪽.

마치 내가 쓴 작품인 양 가방에 넣고 서울에 돌아왔다. 나는 내 삶을 소설가로서 살아가리라 다짐했고, 습작 시절에 얼마나 내가 그 여름방학 동안 내 노트에 옮겨적어본 작품들이 세상에 퍼뜨려놓고 있는 의미망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할일을 찾았으므로 거기에만 매달린 덕에 나는 이른 나에 등단을 했고 누가 뭐라건 꾸벅꾸벅 십년을 걸어왔다.”¹⁴⁾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그대로 베껴쓰기, 즉 필사(筆寫)훈련은 대학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의 ‘문학수업’ 관행이다. 이는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그대로 옮겨 봄으로써 보다 더 깊이 있게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또한, 미학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좋은 작품을 느리게 음미’하는 효과도 있어 문학교육과정에서 권장되는 경우도 많다. 신경숙 또한 필사를 통해 “소설 밑바닥으로 흐르고 있는 양감을 훨씬 더 세밀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방학 시절 필사한 노트가 ‘몇 권’에 이른다고도 썼다. 인용문을 통해 신경숙 문학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신경숙은 자신의 경험세계와 ‘밑바닥을 흐르는 양감’이 결합할 때 내면성에 가닿는 문체적 힘을 발휘한다. 그의 대표작 『외딴 방』이 1990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평가들은 ‘시대와 개인’의 만남을 이끌어내는 문체적 힘을 높이 평가했다. 문체는 베껴쓰기를 통한 문학적 훈련이 작가 자신의 문학세계와 융화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신경숙의 「전설」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의 특정 단락을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유사하다. 이는 신경숙이 다른 작가의 작품을 필사한 작품 목록에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문학사적으로 유명한 작품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특정 작품의 모티프를 공공연하게 차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의 작가들은 영향을 준 작품을 분명히 밝힌다. 표절을 판단할 때,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경숙은 표절 논란이 발생한 이후인 6월 17일 입장표명을 통해 “해당작품(<우국>)을 알 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부인했다. 단락의 유사성에 뿐만 아니라, 「전설」과 「우국」의 구성적 측면과 서사적 측면의 연관성에 비춰볼 때, 신경숙의 입장표명은 오히려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신경숙 표절 사건은 ‘미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타자에 대한 윤리성’ 문제를 환기시켜주었다. 작가는 다른 작가의 글이 자기 작품의 일부로 들어왔을 때 ‘심미적 윤리성’의 문제에 대해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작가는 자기 작품의 미적 창조성을 우선시 할 것인가, 아니면 창작자의 윤리를 우선시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창조적 변형’이라는 표현에는 창작자의 자기 정당화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창작자는 검열에 반대하는 것처럼, 표절에도 반대해야 한다. 표절에 반대하는 것은 단지 다른 작가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창작자가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표절도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 창작자들이 서로에게 갖춰야 할 ‘미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타자에 대한 윤리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필사를 통한 소설쓰기 작업은 ‘문학작품의 복제적 증식’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도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소설이 허구적 진실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14) 신경숙, 「筆寫로 보냈던 여름방학」, 『아름다운 그늘』, 문학동네, 1995, 150~161쪽.

문학사는 ‘허구의 세계를 그린 진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소설문학사의 겹이 두터워질수록 ‘허구적 세계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작가들의 경험세계도 기술문명의 발달에 따라 ‘세계와의 직접적 대면’에서 ‘미디어를 통한 매개적 대면’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다보니, 작가들이 소설속에서 구성해내는 ‘허구적 세계’도 ‘필사노트 속 세계’에 대한 참조물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 소설이 ‘하이퍼텍스트적 현실’을 담아내면서도,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충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복제적 증식’은 육화되지 않은 ‘자기세계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문학예술의 창조성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 징후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신경숙 표절 논란이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 사건의 상징성을 보다 더 깊이 탐구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필사를 거친 글쓰기가 표절을 옹호하는 문학적 알리바이로서 동원될 수는 없다. 육화되지 않은 문학 언어는 영향관계가 아닌 명백하게 작가의 창작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문학권력의 외부를 상상하자

구체적으로 한국 문학의 작동 매커니즘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해 무엇을 다시 점검해야 할까? 무엇이 이렇듯 폐쇄적이고 자기만의 장에 갇힌 문학권력의 작동을 제어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한국문학의 장(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기 합리화는 바깥을 상상하지 못했을 때, 그 굴절 현상이 극심해진다. 문학 장 내부의 폐쇄성이 내부의 시선을 중시하고, 시민적 합리성을 도외시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작가의식이 갖고 있는 지성적 열림마저도, 작가적 전문직업주의에 안주하는 문화가 형성됨으로써 ‘문학의 역할’을 왜곡시키고 있다.

지금 신경숙 표절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한국 문학의 질서가 특정 출판사를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기에 더 격화되는 양상을 띠 수밖에 없다. 출판상업주의가 만들어내는 문학적 상징, 혹은 특정 작가에 대한 신화화에 대해 시민사회는 보편적 상식에 입각해 성토를 하고 있다.

문학이 특별한 자본권력을 형성하지도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문학은 중요한 상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문학의 상징적 권위가 문학권력의 자기 질서유지나, 시민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문학상품 생산을 위해 투여될 때, 대중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시점에서 다음 몇가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문학상업주에 대한 준엄한 자기성찰과 극복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문학출판에서 문학적 권위를 점유하고 있는 창비, 문학동네, 문학과지성사는 실제로 출판상업주의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각 출판사들이 자신만의 문학적 색채를 가지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 지금은 출판자본의 이익이 우선하는 양상이다. 신경숙 작가는

이 세 출판사를 번갈아가며 소설을 간행했다. 처음 신경숙은 문학과지성사에서 소설을 출간했다. 초기작인 『풍금이 있던 자리』 이 그리고 『딸기밭』, 『기차는 7시에 떠나네』가 문학과지성사에서 나왔다. 이후 신경숙 작가는 『외딴방』, 『리진』, 『깊은 슬픔』, 『바이올렛』, 『종소리』 등 대부분의 작품을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발간했다. 이번에 표절문제가 된 『감자먹는 사람들』과 『엄마를 부탁해』는 창비에서 나왔다. 한 작가가 문학적 경향이나 지향과 상관없이 출판사를 번갈아가며 출간하는 관행은 한국 출판산업주의의 현재를 가늠하게 하는 슬픈 풍경이다.

출판산업주의는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장중심의 질서로 인해 문학의 미학적 평가가 휘둘리기에 문제가 있다. 앨런 S. 케이헌은 출판산업주의와 관련해 “사람들에게 ‘훌륭한’ 욕망을 배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욕망을 만족시킴으로써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즉, “이미 표현된 욕구를 만족시킬 뿐, 필요한 욕구가 어떤 것인지, 또는 어떤 욕구가 더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⁵⁾ 출판산업주의에 경도된 문학은 오로지 현재의 욕망만을 요동치게 한다. 신경숙 문학이 『외딴방』 이후 『엄마를 부탁해』에 이르러 더 큰 문학적 성취를 이뤘다는 주장에는 결단코 반대한다. 『엄마를 부탁해』는 ‘더 가치있는 문학’으로 진진된 성취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훨씬 유리한 형태로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을 뿐이다. 이러한 관행은 한국문학의 미래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문학권력의 폭력이다. 출판산업주의를 미학적 판단의 근거로 내세우는 문학권력의 작동 아래에서는 도전적이고, 전복적인 젊은 문학정신의 탄생은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둘째, 문학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자기 성찰이 작가와 독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제기될 필요가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스스로를 놓는 것과 같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동체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작가의 사회적 책임은 공동체의 운명과 함께 하기에 결코 가볍지 않다. ‘신경숙 표절 사건’으로 인해 한국문학의 문단 질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 이는 신경숙이라는 ‘한국문학의 대표적 권위’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의 표출일 것이다. 한국의 대형출판사들이 연합해 ‘한국 대표작가’를 키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신경숙 신화’의 실체이다. 그 근본에는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있으며, 문학작품을 국가의 대표상품으로 간주하려는 굴절된 관념이 자리한다. 한국문학에서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와야 한다는 욕망이 ‘신경숙 신화’를 가능하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의 사회적 책임은 항상 동시대적으로 토론되고 논쟁되어야 할 의제이다. 서효인 시인은 최고의 작가를 만들어 한국문학의 대표적 상징을 만드는 것보다는 ‘1만명의 독자를 가진 50명’의 작가 있는 사회가 훨씬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꼭 50명의 작가가 아니어도 좋다. 문학은 대표적 상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학적 상징이 향유되는 감성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온당하다. 그렇기에 21세기에도 문학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21세기에도 존재하는 문학은 어떤 문학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셋째, 신경숙 표절 사건의 이면에는 비평의 무기력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은 비평의 위기와 비평 부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의 위기가 바로 비평의 위기 때문이라

15) 앨런 S. 케이헌, 정면진 옮김, 『지식인과 자본주의』, 부글, 2010, 449쪽.

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학비평이 특정 출판사와의 관계 속에서만 작동하는 상황에서 한국문학의 자율적 검증작업은 공백지대로 방치되어 있다. 문학비평이 표현을 자유를 옹호하고, 작가와 비평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며, 출판산업주의와 결합한 문학권력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비평은 문학의 역할에 대한 온당한 담론도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고, 문학의 자기 성찰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필자를 포함한 비평가들의 책임이 크다. 한국문학에서 상징권력은 담론과 자본, 그리고 공고화된 문학적 권위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렇기에 담론생산과 비판을 담당하는 비평가들의 진지한 성찰이 더 크게 요구된다.

넷째, 한국문학에는 표절과 같은 문학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건에 대한 자기성찰 시스템이 부재하다. 표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문학 내부의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합의에 입각한 표절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 문인단체를 중심으로 한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신경숙 표절 사건은 한국문학의 존재조건을 바꿔 놓은 문학사적 사건일 수 있다. 한 작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문학에 작동하는 문학권력에 대한 중요한 문제제기의 촉발점일 수 있다. 문학권력의 지배질서는 항상 외부의 문제제기를 포섭하거나 자기화함으로써 상징적 권위를 지속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문제는 기존 문학권력의 갱신이 아니다. 기존문학권력을 낙후시킬 수 있는 외부의 전복이 가능하냐이다. 신경숙 작가 표절에 대한 이용준 작가의 문제제기도 특정 작가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기 보다. 문학권력의 작동 방식과 한국문학의 갱신을 위해 온 몸을 부딪쳐 중을 올린 것이라고 본다. 경직된 질서 속에서 젊은 작가들의 창조성은 좀처럼 활력을 획득하기 힘들다. 등단 시스템, 문학매체 발간 시스템, 문학상 수여 시스템, 문학출판 관행 등과 같은 일련의 문학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문학권력의 외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 가능성을 문학권력의 외부에 있는 아웃사이더들, 젊은 작가들, 문학의 존재 근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가능할 수 있기를 열망해 본다.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는 어떻게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 되었는가

- ‘애도의 정치’ 관점에서¹⁾

정원옥(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1. 의문사에 대한 인식 혹은 관념

흔히 의문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 이야기된다. 그것은 의문사가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이 가장 강렬했던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²⁾ 전두환 정권 시기의 의문사는 군인과 학생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군 의문사도 학생운동을 하다가 강제 징집된 경우에서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문사는 주로 학생운동을 대상으로 강요되었다고 할 수 있다(조희연·조현연, 2002: 162). 19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태우 정권 시기에는 노동자 의문사의 발생이 두드러진다.³⁾ 의문사 발생의 추이가 학생에서 노동자로 변화된 것은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는 민주화운동의 중심세력을 대상으로 국가폭력이 은밀하게 자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요컨대 독재정권이 저항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안전

1) 이 글은 본인의 박사학위논문,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과 애도의 정치』(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의 일부를 요약, 재구성한 것이다.

2) 1기 의문사위에 접수된 의문사의 사망연도별 현황을 보면, 70년대에 14명, 80년대에 55명, 90년대에 16명으로 1980년대에 발생한 의문사 사건의 비중이 64.7%를 차지한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I 권』, 2003: 140).

3) 19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노동운동 관련 의문사는 인천에서 활동한 심재환(1987), 창원 대우정밀 정경식(1988), 구로 대원전기 오범근(1988), 인천연안가스 신호수(1988), 서울 광무택시 문용섭(1988), 인천 협신사 이재호(1989),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1991), 노동운동을 하다 실종된 박태순(1992) 사건 등이 있다.

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경찰, 국방부, 기무사령부 등 권력기관에 의해 공작되고 양산된 죽음이 곧 의문사인 것이다.

이렇듯 국가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생명권침해 사건으로 의문사를 정의할 때, 의문사에는 ‘정치적’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다. 의문사에 붙은 ‘정치적’이라는 수식어는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 죽음과 그렇지 않은 죽음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다.⁴⁾ ‘정치적’ 의문사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의 한 유형으로 일정한 정치적 동기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의문사와 구별된다”(박원순, 1999; 72; 조현연, 2000: 114). 정치적 의문사에는 “‘민주화운동’이라는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이라는 개념이 있고, 국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라는 ‘국가폭력’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홍석률, 2001: 18).

하지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 이른바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의문사의 진상규명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은 아니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해, 그것은 국가폭력이 행사된 ‘정치적 동기’를 유추하는 한 과정일 뿐이지, 의문사를 성립시키는 필수 요건은 아닌 것이다. 더욱이 전체 의문사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 죽음은 절반 남짓이다. 1999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가 집계한 총 42건의 의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정치적 의문사로 분류 된다”(조현연, 2000: 116; 이철호, 2002: 42). 이 말은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의문사 역시 절반이나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의문사를 성립시키는 필수 요건은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든 없든 한 개인이 국가폭력에 의해 부당하게 생명권을 침해당했다는 의혹에 있다. 국가폭력에 의해 자살이나 사고사로 은폐·조작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문사와 ‘일반 의문사’는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의문사특별법)에서 의문사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 한정된 것은 의문사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인식과 고정관념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

선행연구들 역시 의문사특별법이 의문사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한정된 것을 문제 삼는다. 최광준은 “민주화운동가의 죽음은 더 없이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하지만 일정한 가치관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치관이 특별법에 개입되어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한다(최광준, 2003: 188). 박연철 역시 “한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기 때문에 비록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는 그 진상을 규명하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어야

4) 의문사에 붙는 ‘정치적’이라는 수식어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과 그렇지 않은 죽음에 차이를 두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용어의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국가폭력에 의한 모든 의문사는 정치적 의문사에 속한다고 본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과 그렇지 않은 죽음의 편의적 구별을 위해 전자를 ‘정치적 의문사’, 후자를 ‘일반 의문사’라고 칭한다.

한다”라고 지적한다(박연철, 2001: 67). 홍석률은 “의문사 진상규명의 기본 취지와 목적은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 인권침해의 청산에 있는 것이지 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이고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홍석률, 2005: 123).

그런데,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을 문제 삼는 연구자들도 그것이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이 일반 의문사를 배제한 인권 차별적인 요건이며, 의문사의 조사대상을 축소시켰다고 비판하는 데 그치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이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의문사의 사건적 본질인 국가폭력 관련성을 어떻게 희석·왜곡시켰으며, 진상규명운동 내부를 분열시키는 데 어떻게 기능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

의문사의 진실규명은 법과 국가기구를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가 의문사 진실규명에 어떻게 실패하였는지⁵⁾ 그 자체로 드러내고 표시하는 일은 향후 의문사의 과제를 해결 가능한 것으로 기대하고 사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가 어떻게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2.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가 어떻게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 되었는가

1988~1989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135일 농성’으로 진상규명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의문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이야기되지 않았다. 의문사에 대한 정의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공권력에 의한 타살’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이었다. 의문사는 “죽음 자체가 시간과 경위, 동기들이 불명확하며, 정확한 사인들이 은폐된 채 교묘하게 자살 등으로 위장되어 있는 의문의 죽음”(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산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989: 75), “타살 당했음이 분명한 심증 및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의해 은폐·조작되어 사인조차 철저히 묻혀버린 죽음” 등으로 정의되었다(평화민주당 인권위원회, 1990: 157).

‘공권력에 의한 타살’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의문사의 사건적 본질이

5) 의문사에 대한 조사는 1기 의문사위(2000~2002), 2기 의문사위(2003~200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6~2010, 이하 진실화해위)에 이르기까지 약 11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1기와 2기 의문사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진실화해위의 경우, 2010년 1월, 유가족들이 집단적으로 진정을 철회하였을 만큼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밝혀줄 점은, 1기와 2기 의문사위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의문사의 요건으로 요구되었지만, 진실화해위에서는 국가폭력 관련성만으로 의문사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였다.

호도되기 시작한 것은 1998~1999년, 의문사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작성한 최초의 법안에서 의문사는 “사인이 명백히 자연사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곧 국가폭력 관련성이 의문사를 정의하는 핵심이었다.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정부 여당의 법안은 민주화보상법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의 정의⁶⁾를 의문사에 단순 접목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접목은 일차적으로 의문사의 조사대상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여당의 법안은 의문사진상규명운동(이하 진상규명운동)의 내부, 특히 유가협 내부에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유가협은 진상규명운동이라는 이름하에 함께 법제정 투쟁을 하고 있었지만, 의문사 유가족은 의문사특별법에, 유가협은 민주화보상법 제정에 각각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의문사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한정된 문제가 의문사 유가족들 사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면 모를까, 유가협 내부에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학철에 따르면, “의문사 유가족 대다수는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삭제하자는 입장이었고, 의문사 이외의 유가족, 특히 지도부의 경우에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유가협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사한 사람의 문제로 싸워 왔는데 확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김학철, 2004: 359).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단순화하면, 의문사 유가족은 국가폭력 관련성에, 유가협은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는 데 더 큰 무게를 두고 법제정 투쟁을 함께 벌여왔음을 알 수 있다.

유가협 지도부와 의문사 유가족들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유가협의 산하 조직으로 의문사지회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비롯된다. 1986년,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로 발족한 유가협은 창립선언문에서 “민주제단에 희생이 된 (...) 고인들이 하나뿐인 생명을 바쳐가면서 목말라 외치던 바를 살아 있는 가족들이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을 설립 취지로 밝히고 있다.⁷⁾ 1988년, 유가협이 정치·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던 의문사를 자신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이며 ‘135일 농성’을 벌인 이유는 이러한 설립 취지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유가협은 의문사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죽음으로 보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유가협에게 의문사가 특별하고 중요

6)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제2조 제1호)으로 정의된다.

7) (<http://blog.naver.com/pppbbbggg>).

했던 것은 그것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억울한 희생이라기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의문사 유가족들이 유가협으로 모인 것은 가족의 죽음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당시로서는 의문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유가협 뿐이었기 때문이다.

유가협은 국가와 사회가 의문사 문제를 외면하였던 오랜 세월 동안 의문사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싸워준 유일한 시민단체였다. 그런데, 정작 의문사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의문사의 조사대상을 축소하고 싶은 정부 여당의 이해관계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희생을 성역화하고 싶은 유가협 지도부의 욕망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여당의 법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일반 의문사만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주의운동과 관련한 의문사 또한 배제한다. 진상규명운동 진영의 고민은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발생한 사회주의운동 관련 인권침해 사건들⁸⁾이 의문사특별법에서 배제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9년 11월 18일, 의문사지회가 국회에 청원한 ‘의문사(등 생명권 침해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진상규명운동 진영의 고민을 보여준다. 이 법안은 의문사의 조사대상을 “실종되거나, 생명권을 침해당한 사건”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일반 의문사를 포괄하자는 것이라기보다는 민주화운동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 법안은 진상규명운동 진영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죽음으로 의문사를 한정된 정부 여당의 법안을 실질적으로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진상규명운동 진영이 정부 여당의 법안을 실질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진상규명운동의 차원에서 일반 의문사가 배제되는 것에 대해 묵인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의문사만이라도 먼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진영의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운동이 견지해왔던 대의명분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일이다. ‘국가폭력에 의한 타살’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진상규명운동의 대의명분은 운동 진영이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진상규명운동이 분열되기 시작한 것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 의문사에서 특권적 위치를 갖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의문사특별법은 1999년 12월 28일, 민주화보상법과 함께 여당의 법안대로 통과되었다.⁹⁾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야당 단독의 힘이 아니라, 이른바

8) 사상전향 공작과정에서 사망한 남과 간첩과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 ‘사법 살인’이라 불리는 인혁당 사건 관련자 등이 이에 속한다.

‘DJP 연합’, 김종필과의 연대를 통해 성사된 것이었다.¹⁰⁾ 5·16 군사 쿠데타 세력과 연합한 자유주의 성향의 정부, 국민회의·자민련의 공동여당, 여소야대의 국회 등은 과거청산이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조건들로 꼽힌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받는 동시에 “권위주의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은폐되었던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해결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개혁적인 정책 집행이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었다(신광영, 2002: 167~168). 이러한 정치적 조건에서 야당과 여당 내 우익세력의 반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김대중 정부로서는 조사대상·조사권한·조사기한 등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진상규명운동 진영 또한 자신들의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이기에는 역량이 부족했다. 1998년 11월~1999년 12월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개된 ‘422일 천막농성’은 유가협과 일부 시민단체만의 고립된 싸움이었다.¹¹⁾ 일부 진보적 언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언론이 의문사에 대해 침묵했으며, 시민단체와 사회운동단체들 또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연로한 유가족들에게 노숙을 하게 하면서 장기농성을 이어가는 것이 힘에 부쳤던 진상규명운동 진영으로서는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절박한 목표였을 수 있다.

살펴보았듯이,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정의된 것은 의문사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의문사특별법과 민주화보상법의 동시통과는 역사적 사건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의문사가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의문사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의문사는 ‘정치적 의문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점차 일반화되었다. 다시 말해, 의문사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죽음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고정된 관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의문사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죽음이 된 것은 한편으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어떤 억울한 죽음(들)이 공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타협하고, 결정하는 ‘애도의 정치’가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애도의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기억의 정치와 마찬가지로 ‘위로부터’도 구사되고,

9) 민변안, 정부여당 안, 민간단체 안, 의문사특별법에서의 쟁점 비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I 권』. 2003. 68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김종필은 장준하, 최종길 등 의문사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등 중앙정보부가 개입된 국가폭력 사건들에 대해 해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과거사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였던 그는 “공소시효가 지난 의문사를 재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유진, 2002: 76).

11) 김정섭, 「‘무관심과의 외로운 싸움’ 유가협 ‘천막농성’ 365일째」. 『경향신문』. 1999. 11. 4. 23면

‘아래로부터’도 전개되는 것이다. ‘위로부터’ 구사되는 애도의 정치는 국가가 진실을 밝히고 애도하며 기념해야 할 죽음(들)을 선별하고 포함하고 관리하는 통치의 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아래로부터’ 전개되는 애도의 정치는 죽음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정치·사회적인 조건에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국가와 사회에 호소하고, 촉구하고, 압박을 가함으로써 죽은 자에 대한 충실을 다하고자 하는 남은 자들의 모든 실천적 행동을 함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원옥, 2014: 19). 의문사의 경우와 같이 죽음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정치·사회적인 조건으로 인해 애도와 기억, 기념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 애도의 정치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동원될 수밖에 없는 진상규명운동 주체의 실천적 전략이 된다. 그것은 유가족의 고통을 전면에서 내세워 억울한 죽음(들)을 끊임없이 불러내고 살려냄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끊임없이 호소하고 촉구하고 압박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진상규명운동이 김대중 정부로 하여금 의문사특별법과 민주화보상법을 수용하도록 만든 것은 애도의 정치를 효과적으로 전개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의문사의 조사대상을 한정한 것 역시 애도의 정치가 작동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국가와 진상규명운동의 애도의 정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진상규명운동 내부에 애도의 과잉정치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애도의 과잉정치화란, “국가기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애도의 정치가 과잉·왜곡되거나 변질되는 현상”을 통칭하는 개념이다(정원옥, 2014: 19~20). 의문사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유가협 지도부가 보여준 태도는 애도의 과잉정치화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희생을 성역화하고 싶은 유가협 지도부의 욕망은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충실성의 논리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기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진상규명운동 내부가 극심한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게 된 것 역시 애도의 과잉정치화 현상으로 읽게 되면 사태의 본질이 더 선명히 드러날 수 있다.

국가기구를 통한 의문사 진실규명이 실패한 모든 책임을 의문사에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이 적용된 데 물을 수는 없다. 조사권한의 문제는 조사대상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조건일 수 있다. 하지만, 의문사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한정하는 것이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조사대상을 축소시키는 것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낳았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이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 추적하고 기록함으로써 국가기구에 의한 의문사 진실규명의 가능성을 새롭게 사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의 기능과 효과

의문사특별법은 조사권한·조사대상·조사기간에서 많은 한계가 있는 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의문사가 절반이 넘었던 당시 상황¹²⁾에서 국가가 의문사특별법을 수용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의문사의 경우, 범죄 사실이 성립되면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국가기구는 검찰에 사건을 고발 혹은 수사 의뢰를 하는 등¹³⁾ 책임자와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공소시효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의문사특별법의 통과는 의문사를 자행한 권력기관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에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접목한 것을 단지 조사대상을 축소하려는 단순한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그것은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더 많은 부정적 기능과 효과들을 낳았다.

1) 독소적 조항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성

의문사특별법의 제2조에서 의문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의문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 명시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성과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으로 명시되는 국가폭력 관련성이라는 두 요건으로 구성된다.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의문사라는 국가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성과 국가폭력 관련성이라는 두 요건의 충족으로 의문사를 정의하는 것은 우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 “두 요건은 사실상 서로 상충되는 요건들이다. 국가

12) 1기 의문사위가 조사한 83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은 46건이다. 당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던 사건의 현황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 I 권』, 2003: 143~145쪽을 참조하라.

13) 의문사특별법 제31조 제1항 참조.

공권력에 의한 범죄행위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면, 그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었건(…) 피해자 측의 사정은 요건이 될 수 없다. 반대로 민주화운동가를 기리기 위해서, 민주화운동가의 죽음에 대한 진상만을 밝히고자 한다면, 그가 공권력에 의해 살해되었건 어느 개인에 의해 살해되었건 그것은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게 된다”(최광준, 2003: 188). 의문사특별법을 제정한 취지가 민주화운동가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폭력에 의한 타살 의혹을 밝히는 데 있다고 한다면,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죽음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생전의 행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우를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정지석, 2003: 43).

그 동안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은 인권을 차별한다는 점 때문에 의문사특별법의 독소적 조항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이 민주화보상법이 규정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함으로써 의문사의 진실 규명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해 놓았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민주화보상법의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은 박정희 독재체제가 삼선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 날인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서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할 책임이 있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실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된다.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활동만이 민주화운동으로 국가의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민주화보상법의 정의에서 핵심적인 용어는 ‘침해’라고 할 수 있다.¹⁴⁾ 이 법의 시행령 제2조, “국가폭력과 관계 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은 “국가폭력이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행해진 경우의 피해만을 제도적으로 승인하겠다는 것을 나타내준다”(정근식·정호기, 2004: 105). 이 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했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더라도 민주화운동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보상 자체를 거부하여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의문사와 같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국가의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의문사특별법에 그대로 차용한 것이 어떻게 의문사의 진실규명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가? 민주화운동의 정의에서 ‘침해’는 권위주의 통치에 대해 ‘항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다. ‘침해’를 당한 원인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했다는 피해자의 행위에 있다. 그런데 의문사에서는 생명권

14) ‘민주화운동 관련자’에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된 자, 상이자, 질병을 앓거나 그 후 유증으로 사망한 자,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이 포함된다.

의 박탈이라는 중대한 침해로 인한 원인이 피해자의 항거 행위에 있지 않다. 그것은 국가안전기획부, 경찰, 국방부, 기무사령부 등 가해기관들의 ‘정치적 동기’에 있는 것이지, 항거를 했던 수동적으로 죽임을 당했던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의문사라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의문사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가해기관의 ‘정치적 동기’가 밝혀지는 과정 속에서만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의문사 사건의 남은 자들에게는 의문사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누가 죽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의 ‘정치적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물론 “관련한”이라는 용어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말은 아니다. 덜 인과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에게 죽은 가족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추모·기념사업회와 같은 조직이 꾸려져서 자료가 보존되어 있고 증언 가능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민주화운동 전력을 찾아내서 국가기구에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1기 의문사위는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되어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관련 증거와 기록의 멸실, 중요 참고인의 사망 또는 기억의 퇴색 등으로 말미암아” 조사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I 권』, 2003: 263). 2기 의문사위 역시 “오랜 세월이 흘러 목격자 등을 찾는 것이 어렵고, 설사 목격자를 찾아도 그 기억이 희미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건 발생장소 및 사건현장에서의 증거도 이미 없어졌거나 변형되었고, 사체는 이미 처리되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점을 진상조사의 어려움으로 꼽는다(『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I』, 2004: 143). 피해자 유가족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은 “제도적으로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놓은 것에 다름없다”(정근식·정호기, 2004: 111). 의문사 진실규명작업은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했지만, 이것이 무리하게 민주화운동 관련성과 연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활동의 본질이 흐려지게 될 위험성을 구조적으로 갖게 되었다”(홍석률, 2005: 123).

요약하자면,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사특별법의 독소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그것은 법 앞에서 동등해야 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차별한다. 둘째, 의문사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국가폭력 관련성이 밝혀지는 과정에서만 입증될 수 있는 것이다. 유가족에게 먼저 자료를 제시하게 하고, 국가기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의문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제시킨다는 점에서 그것은 의문사의 진실규명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건이다.

2) 의문사를 ‘결정’하는 요건, 민주화운동 관련성

어떤 죽음이 의문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국가기구의 ‘결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은 어떻게 작용했을까? 국가기구의 결정은 유가족에 의해 진정된 사건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인정’은 국가폭력 관련성과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고, ‘불능’은 두 요건 중 한 가지라도 판단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고, ‘기각’은 두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다. 1기 의문사위와 2기 의문사위의 결정을 살펴보면, 국가폭력 관련성과 민주화운동 관련성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함으로써 ‘불능’이나 ‘기각’으로 처리된 사건들의 비중이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¹⁵⁾

1기 의문사위의 결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의문사는 대체로 국가폭력 관련성에서는 ‘불능’, 민주화운동 관련성에서는 인정을 받음으로써 ‘불능’ 결정을 받는다. 이에 반해 일반 의문사는 국가폭력 관련성이 인정되었다라도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없을 경우, ‘기각’ 결정을 받는다. 두 경우 모두 의문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정치적’ 의문사에 대해서는 국가기구의 결정이 연기되는 반면, 일반 의문사에 대해서는 의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2기 의문사위의 결정을 살펴보면, 1970년대 국가폭력 관련성이 명백한 비전향 장기수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면서 의문사에 해당한다는 인정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국가폭력 관련성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1980년대 의문사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성만 인정함으로써 대거 불능 결정을 내린다. 국가폭력 관련성은 인정되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1기 의문사위와 달리 불능 결정을 내렸다.

1기 의문사위와 2기 의문사위는 의문사에 대한 결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해석하는 입장과 폭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위원회 모두에 공통적으로 드는 의구심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국가폭력 관련성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었을까? 반대로 국가폭력 관련성이 인정되었는데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다는 근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적지 않은 의문사가 국가기구로부터 ‘인정’ 결정을 받았지만, 책임자와 가해자가 특정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그렇다면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국가폭력 관련성이 밝혀지는

15) 1기 의문사위에서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여 ‘불능’이나 기각 결정을 받은 사건은 모두 31건이다. 국가폭력 관련성은 ‘불능’인데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불능’ 결정을 받은 사건이 21건, 국가폭력 관련성은 인정되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이 7건이다. 의문사위 2기에서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여 불능 결정을 받은 사건은 신청 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22건이다. 국가폭력 관련성이 ‘불능’인데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되면서 ‘불능’ 결정을 받은 사건이 17건, 국가폭력 관련성은 인정되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불능’ 결정을 받은 사건이 3건이다.

과정 속에서 입증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가족이 제시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전력 유무로 대체된 것이고, 국가기구 위원들의 정치적 입장과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국가기구 위원들이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전력은 민주화운동 관련성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요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이 인정되어야만 국가폭력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때, 국가기구의 진실에 대한 판단과 결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의문사의 사건적 본질인 국가폭력 관련성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중앙정보부나 삼청교육대, 군대나 감옥 등에서 발생한 의문사처럼 국가폭력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국가기구의 과거청산 의지를 드러내면서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¹⁶⁾ 반면, 1980년대에 발생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관련 의문사처럼 국가폭력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불능’이라는 법적 장치와 결합되면서 유가족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봉합하는 수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국가폭력 관련성이 밝혀지더라도 유가족이 민주화운동의 전력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의문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일반 의문사를 합법적으로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

결과적으로, 국가기구의 결정에서 의문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건은 국가폭력 관련성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국가폭력 관련성을 규명하기 힘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들은 의문사로 ‘포함’함으로써 유가족의 반발을 봉합하고, 국가폭력 관련성이 밝혀지더라도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죽음들은 의문사가 아닌 것으로 ‘배제’함으로써 의문사 유가족 내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3) 사상을 검열하고 차별하는 장치

국가폭력 사건을 피해자들의 개별보상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사건의 본질과 성격을 희석·왜곡하는 것은 5·18에 대한 제도적 해결에서부터 국가가 일관되게 유지해온 과거청산방식이다. 의문사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의문사의 정의에 접목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포함과 배제라

16) 1기 의문사위가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치사당한 최종길 교수 사건, 인혁당 간첩조작 및 사법살인 사건과 관련한 장석구 사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한총련 간부 김준배 학생 사건을 의문사로 인정한 사례와 2기 의문사위가 비전향 장기수 사건을 의문사로 인정한 사례가 이러한 예에 속한다.

는 국가의 일관된 과거청산 기조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호기는 5·18 피해자에 대한 신군부와 전두환 정권의 ‘피해보상’이 ‘포섭과 배제의 전략’에 입각하여 진행되었음을 분석한 바 있다. “신군부는 5·18 이후 숨 막히는 분위기를 지속시키면서 피해보상을 통해 포섭대상과 처벌대상 그리고 자발적 은폐대상으로 차별화했다. 이 분기선은 정부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저항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로 표면화되었다”(정호기, 2006: 128). 그에 따르면, 이러한 전략의 목표는 피해자 집단을 말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5·18의 저항적·역사적 의미를 보상을 매개로 세속적인 가치로 전환시키는 데 있었다. 최정기 역시 5·18의 제도적 해결 과정은 “광주·전남지역민 사이에, 피해자와 광주시민들 사이에, 또 피해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었고, 결국 5월 운동으로 표상되는 기억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비판한다(최정기, 2006: 12).

국가의 보상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희석·왜곡되었다고 하는 5·18의 역사적·저항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5·18의 정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정운은 5·18에 대한 담론 분석에서 “5·18의 광주시민들이 남긴 최후의 담론, 그들의 유언은 민주주의이며, (...) 현재 우리 사회에서 5·18의 첫째 정신으로 합의되어 있는 민주주의는 그들이 요구한 최저선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최정운, 1999: 91~92). 그의 결론대도 ‘민주주의’가 최후의 승자로 살아남은 5·18 정신이라고 할 때, 그것은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각계각층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5·18에 대한 제도적 해결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그 의미가 희석·왜곡 되었을까?

과거청산이 법과 제도에 근거한 국가기구의 활동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가가 과거청산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청산을 통해 국가가 복원하고자 하는 역사의 진실이란 무엇인가? 미셸 푸코에 따르면, 진실은 사회의 권력관계에 의해 생산되는 담론의 효과다.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권력이다. “권력은 진실의 추구를 제도화하고 전문화하고, 그것을 보상한다”(푸코, 1997: 43). 과거청산은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폭력과 관련된 현대사의 진실을 생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진실 담론의 역설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 의해 진실이 완결된다는 데 있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고백을 판독함으로써” 비로소 진실의 담론이 구성된다는 것이다(푸코, 2004: 89). 따라서 사건의 남은 자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바로 그것을 증언해야만 한다. 듣는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진실담론에서 권력이 작동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푸코의 이론을 빌어 5·18에 대한 제도적 해결에서 5·18의 역사적·저항적 의미가 어떻게 희석·왜곡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국가는 5·18에 대한 제도적 해결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기억만을 역사의 진실로 요구하였다. 5·18 사건의 남은 자들이 피해 중심의 기억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가가 요구하는 진실을 증언해야만 보상 체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민주화운동은 국가가 구제할 책임이 있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국가의 구제 대상이 아닌 참여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국가에 전유된다. 즉, 국가폭력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포함되면서 그들이 기억이 5·18에 대한 진실담론이 된다.

기억은 “그 자체가 갈등의 과정이며 사회세력들 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의 산물”이다(최정기, 2006: 4; 이소영, 2011: 273). 5·18을 둘러싼 ‘기억전쟁’ 혹은 ‘기억의 정치’는 피해자 집단의 기억이 국가의 공식기억으로 결정되는 과정이었으며,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국가에 전유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민주화 담론에 포섭된 5·18은 반독재민주화운동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독재정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정치적 민주화가 확립된 상태에서는 5·18의 저항적 보편성이 ‘현재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퇴색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김정환, 2010: 184). 요컨대 피해자의 기억만으로 재현된 민주화운동을 진실담론으로 생산하는 제도적 해결 과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저항했던 시민운동으로서 5·18의 역사적·저항적 의미는 희석·왜곡되었다고 할 수 있다.

5·18의 제도적 해결 방식은 의문사의 제도적 해결 방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전두환 정권이 피해자를 포함하고 저항공동체를 배제하였다면 김대중 정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을 포함하고 일반 의문사를 배제하였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은 전두환 정권에서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국가폭력 사건을 해결해온, 포함과 배제라는 국가의 일관된 과거청산의 기조 속에서 전략적으로 의문사에 접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의문사를 개별 사건화하고 의문사들 간에 차이를 만들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문사의 사건적 본질을 희석·왜곡하는 효과를 낳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은 일반의문사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도 배제한다. 1기 의문사위는 김준배 사건을, 2기 의문사위는 비전향 장기수 사건을 의문사로 인정하였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은 가해 집단 및 과거 질서 옹호 세력들로 하여금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반발과 역공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논리적 근거로도 활용되었다. 즉 한총련 간부인 김준배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단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라고 볼 수 없으며, ‘빨갱이’인 비전향 장기수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체제 수호 세력들의 반발과 역공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박현주는 김준배 사례와 비전향 장기수 사례에서 나타난 이러한 반발과 역공을 민주화의 역진 혹은 ‘반동적 동시화 운동’¹⁷⁾으로 설명한다. “분단체제에

17) 블로흐가 나치 대동기 독일사회에서 관찰한 ‘반동적 동시화 운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박현주의

위기의식을 느낀 세력은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행위로서 김준배 사례, 북한과 연결된 행위로서 비전향 장기수 사례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분단체제의 문제를 제기하는 쟁점이 제기되자 이에 격렬하게 반발했”는데, 그것이 ‘반동적 동시화 운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박현주, 2015: 156). 결과적으로 의문사위 활동은 의문사에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이 접목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이념논쟁에 휩쓸리면서 큰 타격을 입었고, 의문사의 사건적 본질은 더 희석·왜곡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재승은 의문사특별법과 민주화보상법에 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성’ 개념이 국가기구에 의한 의문사 진실규명에서 ‘이중의 잠금장치’로 작용했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두 법의 연계는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국가폭력의 일방적 피해자를 배제시켰고, ‘빨갱이’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낡은 관념을 현대화했다.(…) 한 마디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나면 더는 규명할 것이 없어야 하는데, 가해자인 국가가 어느새 피해자의 민주성을 심사하는 파렴치를 제도화한 것이다”(이재승, 2010: 186~187).

결론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은 민주화에 기여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는 죽음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전략적으로 접목된 것이다. 그것은 국가기구의 실제 법 적용에서 국가가 구제할 가치가 있는 죽음인지 아닌지를 선별하고 판단하는 이중적 잣대로, 희생자의 사상을 검열하고 차별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애도의 과잉정치화를 낳은 민주화운동 관련성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을 하는 일은 각기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었어야 할 과거청산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사특별법에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을 무리하게 접목하고 또 그 요건을 민주화보상법과 연계한 것은 진상규명운동 내부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했을까?

우선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의문사위의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의문사 유가족과 일반 의문사 유가족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냈다. ‘정치적’ 의문사 유가족들은 조사활동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그 결과가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로 넘어가기를 바란다. 반면 일반 의문사 유가족들은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해석하는 입장과 폭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국가기구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 시 의문사 사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접근방식을 취함에 따

『이행기정의의 딜레마: 세 가지 사례의 의문사 진상규명 과정을 중심으로』(성공회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29-30쪽)를 참조할 것.

라 초래된 일이었으며, 그 결과 유가족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벽을 쌓게 하였다”(박래군, 2003: 72).

의문사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쌓인 의문사 유가족들 사이에 감정의 벽은 의문사위에서 민보상위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더 분명한 균열로 드러나게 된다. 의문사특별법은 의문사위가 진실규명으로 인정한 사건의 경우, 민보상위에 다시 심의를 요청하여 보상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⁸⁾ 의문사위는 조사만 하고, 보상은 민보상위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것이다. 문제는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의문사특별법보다 민주화보상법이 훨씬 더 까다롭다는 데 있다. 의문사특별법에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만 입증하면 되지만, 민보상위에서는 항거로 ‘인하여’ 침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연계는 “민주화보상법이 의문사위원회가 결정한 의문사에 대하여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이철호, 2003: 155~156).

의문사위가 인정한 사건에 대해 민보상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의문사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은 사건들이 민보상위에서는 대거 기각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민보상위는 1970년대의 장준하 사건을 비롯하여 인혁당 관련사건, 비전향 장기수 사건, 1980년대의 노동운동 관련사건에 대해 대거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¹⁹⁾ 의문사위에서 민보상위로 넘어간 50여 건의 사건 중 ‘기여도’를 받아 인정된 사건이 8건이며,²⁰⁾ 기여도 없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의문사 사건은 고작 13건에 불과하다.

‘기여도’란, 민보상위가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를 진행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백분율 단위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민보상위에서 어떤 의도로 죽음을 백분율로 계량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의문사 사건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입증하

18) 의문사특별법 제26조 참조.

19)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한 사건이 민보상위에서 기각된 사례로는 신민당 금산지구당 위원장이었던 양상석 사건, 목표 야당 선거조작 공작 사건인 김창수 사건, 유신체제하 민주화운동가였던 장준하 사건(명예건만 일부 인정), 인혁당 간첩조작 및 사법살인 사건과 관련한 장석구 사건(명예건 인정), 남파 간첩 출신 비전향 장기수 김용성·변형만 사건, 사상진항 공작 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손윤규·최석기·박용서 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 활동 중 행방불명 된 정은복 사건, 군의문사 사건인 최은순·정연관·박성은 사건,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사망한 심재환 사건, 서울 광무택시 문영섭 사건, 택시회사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다 실종된 임태남 사건, 노동운동을 하던 중 열차사고로 위장·실종된 박태순 사건(명예건 인정), 학생운동을 하던 중 열차사고로 숨진 문승필 사건(명예건 인정), 인천 아암도 노점상 농성 도중 사망한 이덕인 사건 등 23건에 이른다.

20) 의문사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은 사건 가운데 민보상위에서는 기여도로 인정된 사건도 적지 않다. 민보상위에서 기여도를 받은 사건은 1978년 도시산업선교회에서 활동하다 의문사한 정법영 사건(60%), 학생운동 관련 우종원 사건(75%), 안치웅 사건(50%), 이내창 사건(60%), 박동학 사건(60%), 군의문사인 김용권 사건(60%), 노동운동 관련 이재호(30%), 오범근(70%), 박창수(30%) 등 9건이다.

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든가,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의문사 사건의 일부라도 구제하기 위해 기여도라는 장치를 마련했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민주화운동 관련 정도를 산정하는 이러한 장치에 또 다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의문사 유가족들일 수밖에 없다.

의문사 유가족들이 민보상위에 일괄 보상 신청을 한 것은 2기 의문사위의 활동이 종료되기 직전이다. 1기 의문사위 활동이 종료된 후 대부분의 의문사 유가족들이 민보상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명예회복이나 보상보다는 진실규명이 우선적 과제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2기 의문사위에서도 대거 ‘불능’ 결정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운동 내부의 협의를 거쳐 민보상위에 일괄 보상 신청을 하기에 이른다.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민보상위의 심의 결과는 각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의문사위가 진실규명을 하지 못한 것은 현실적 한계로 받아들여더라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 동안 ‘열사’로 자리매김 되어왔던 죽은 자의 정의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문사의 진실규명에 실패하고 명예회복조차 되지 못한다면 20~30년 동안 진상규명운동에 쏟아온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면서 유가족들은 민보상위의 인정을 받기 위해, 기여도를 받더라도 더 높은 퍼센트의 기여도를 받기 위해 농성을 전개하거나 목숨을 거는 유가족들까지도 나타나게 되었다.

요번에도 올려가지고 안 되마 죽을 기다, 마음속으로 인자는 내가 할 만큼 달려들다가 안 되면 나는 인자 서울서 죽는다. 죽는다 소리 안 하고 자복자복 댕기면서 **죽을 때는 정치하는 지붕에서, 국회의사당 꼭대기서 죽어야 된다.** 내가 국회 꼭대기 올라가는 것은 어디로 어디로 올라가는지 봐 냈거든예. (김을선, 2011: 152~153. 강조는 필자)

정경식²¹⁾의 어머니인 김을선의 구술은 민보상위의 심의 결과에 목숨을 걸만큼 절박했던 유가족의 심경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진실규명에 실패했는데 명예회복마저 안 되면 죽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런데 그녀가 선택한 죽음의 장소가 의미심장하다. “정치하는 지붕”, 법을 만드는 장소인 국회의사당이 그녀가 선택한 죽음의 장소인 것이다. 그녀는 왜 하필 “국회의사당의 꼭대기”에서 죽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의문사의

21)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였던 정경식은 1987년 6월, 민주노조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되었다가 9개월 만에 창원 소재 불모산에서 유골 상태로 발견되었다. 1기, 2기 의문사위, 진화위는 이 사건에서 ‘불능’ 결정을 내렸고, 민보상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정경식의 장례는 2010년 9월 8일, 사건이 발생한 지 23년 만에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치러졌다.

정의를 바로 세워주지 않은 의문사특별법과 민주화보상법의 부정의를 법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을까.

데리다에 따르면,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은 계산의 요소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만, 정의는 계산 불가능한 것이며, 정의는 우리가 계산 불가능한 것과 함께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데리다, 2004: 37. 강조는 데리다). 계산하는 법에게 계산 불가능한 것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는 정의란 언제나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아포리아의 경험인 것이다. 그렇다면 데리다는 왜 실현 불가능한 정의를 법에 요구하는 것인가? 그것은 “계산 가능한 것과 계산 불가능한 것의 관계를 계산하고 **협상해야**” 하기 때문이다(데리다, 2004: 60. 강조는 데리다). 법이 정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안에서 정당한 계산과 부당한 계산이 있을 수 있다. 법이 더 정당한 계산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것이 계산 불가능한 것을 계산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리다적 개념에서의 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김을선이 “정치하는 지붕”, 국회의사당에서 죽음을 맞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의문사특별법과 민주화보상법이 의문사에 대해 정당한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에 호소함으로써 정의의 가능성을 열고자 했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민보상위의 결정은 의문사 유가족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절망이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기여도를 받기 위한 유가족들의 싸움은 ‘애도의 정치’가 과잉정치화된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것은 죽은 가족의 ‘목숨 값’을 더 받아내려는 피해자 유가족의 추한 몸짓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서라도 진실규명을 못해준 한을 풀려는 의문사 유가족들의 싸움을 애도의 과잉정치화라고 할 수 있을까.

같은 시기, 진상규명운동 내부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에 휩싸여 있었다. 유가협은 민보상위의 보상이 시작되면서 기념재단과 민주묘역 조성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한 의문사 유가족들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유가협 내에 논쟁으로 떠올랐다. 그것은 한 마디로 국가의 관리 대상에 ‘포함’ 되지 않은 의문사 유가족을 유가협이 안고 갈 것인가, 분리하고 갈 것인가의 문제로 요약된다. 시민단체 활동가였던 정○영은 민보상위의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유가협 내에 분열의 조짐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유가협이 자체 정리할 필요를 느꼈어요. 민주열사 아닌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문사 유가족에 대해서도 진골을 가리자는 거지.** 나중에 민주묘역에 갈 사람들, 진골끼리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견해도 일부 있었어.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인정받기 전에 이거 안 될 거다, 라고 해서 어떻

게 인정받은 사람들만 데리고 가냐?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자기가 인정받는 순간 선을 딱 긋는 사람들도 있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정○영, 10. 강조는 필자)

정○영의 구술에 따르면, ‘진골’은 ‘민주열사’이며,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민주묘역에 묻힐 자격을 획득한 죽음이다. 이에 반해 의문사는 사회적으로는 ‘열사’로 불리고 있지만,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사로서의 정체성을 공인받지 못한 죽음이다. “의문사 유가족에 대해서도 진골을 가리자”는 일부 유가협 부모들의 주장은 민주묘역에 묻힐 자격을 공인받은 열사와 공인받지 못한 죽음을 유가협 내에서도 구분하고 분리할 때가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묘역 조성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국가의 인정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만이 안장될 자격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의문사에 대한 민보상위의 결정이 공정한 계산에 의한 것이었는지,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모든 국가기관들이 급격하게 보수화되어 가는 있는 추세에서 민보위상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나 의문사 사건의 경우에는 천박한 논리와 경직된 판단으로 번번이 불인정되었고, 그 중에서도 노동사건은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생존권 투쟁 정도로 폄하되어 불인정되는 사례가 속출했다”(『정경식 열사추모자료집: 어머니』, 2011: 243). 이러한 결과는 민보상위의 결정이 정권의 성격에 크게 좌우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민보상위의 결정이 어떤 정부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의문사에 대해 유가협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설령,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 유가족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싸워왔다면 유가협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국가로부터 배제된 의문사 유가족들을 조직으로부터 유가족을 분리하려 한 유가협 지도부의 태도는 엄밀히 말해, 수십 년 동안 함께 반독재민주화운동을 해왔던 동지에 대한 배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두 개의 유가협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단법인 유가협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한 의문사 유가족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의문사 유가족들은 별칭 ‘한울삶 유가협’이라고 불리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실천협의회 의문사지회에 속해 있다. 민보상위는 ‘한울삶 유가협’을 배제한 채 사단법인 유가협과의 협의 하에 ‘이천민주화운동기념공원’ 건립 사업을 추진했고, 한울삶 유가협에 소속된 유가족들 대부분이 안장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은 2016년 4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198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함께 싸웠고, 1990년대 진상규명운동을 이끌

어은 실질적 주체인 유가협이 갈등과 분열은 애도의 과잉정치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들을 ‘순수한’ 희생과 ‘알 수 없는 죽음’으로 위계화하고, ‘순수한’ 희생자만을 도덕화·신성화·성역화하고 싶은 일부 유가족들의 욕망은 언제나 그렇듯 희생자에 대한 충실성의 논리, 희생자의 뜻과 정신을 이어받는 고결한 사명감의 논리로 정당화된다. 문제는 일부 유가족들의 그러한 욕망이 국가가 구사하는 애도의 정치에 손쉽게 활용되거나 심지어 동조 관계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의문사에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접목되고,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이 공론화의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구사하는 애도의 정치에 일부 유가족들의 적극적으로 동조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아래로부터’의 애도의 정치가 제도화의 과정 속에서 변질, 왜곡되는 전형적인 애도의 과잉정치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진상규명운동 내부를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게 하면서 동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국가기구에 의한 의문사 진실규명을 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5. 다시 ‘애도의 정치’로

이 글은 의문사 진실규명에서 민주화운동이 갖는 의미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죽음들의 역사적·저항적 의미를 훼손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의문사의 경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죽음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은 의문사의 사건적 특징을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 글은 법과 국가기구를 통한 의문사의 해결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이 접목된 것이 의문사의 진실규명을 어떻게 불가능하게 하고 진상규명운동 내부를 어떻게 분열시켰는지, 의문사의 사건적 본질을 어떻게 희석·왜곡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애도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의문사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그 의미가 희석·왜곡된 것은 ‘정치적’ 의문사만을 포함하고 일반의문사를 배제한 국가의 ‘애도의 정치’와 민주화운동 희생자만을 성역화하고 싶은 일부 유가족들의 ‘애도의 과잉정치화’가 결합·동조한 결과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의문사의 제도적 해결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5·18에 대한 해결에서부터 과거청산의 제도화 과정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20년 가깝게 과거청산작업이 진행되어오고 있지만, 곳곳에서 새로운 갈등과 분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애도의 과잉정치화가 한 원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애도의 정치’ 관점은 의문사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정치·사회적인

조건에서 법과 국가기구를 통한 의문사의 진실규명을 가능한 것으로 기대하고 사고하기 위해, 나아가 법과 제도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할 과제로 의문사 문제를 다시 바라보기 위해 동원한 것이다. 유가족들이 중심이 애도의 정치가 법과 국가기구에 의한 의문사 진실규명의 기회를 만들어냈다면,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의문사 진실 규명은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애도의 정치를 통해 모색할 수밖에 없다. 제도적 해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애도의 과잉정치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다시’ 애도의 정치를 전개하는 진상규명운동의 주체들이 해결해야 할 성찰적 과제일 것이다.